

# 「한국체육대학교 표창 규정」

전부개정 2022. 11. 16. 규정 제883호

## 1. 개정이유

- 우리 대학 표창 규정은 각종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부서마다의 다른 기준으로 시상을 운영하여 일관되지 않기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재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「정부 표창 규정」 등을 준용하여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규정 제명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정정함
- 표창 대상자 신설로 수여자 기준 명확화(안 제2조)
- 「정부 표창 규정」 등을 준용하여 표창의 종류 추가(안 제3조)
- 표창 시기를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표창의 영예성 제고(안 제4조)
- 표창방법 및 추천 등을 통일화하여 표창에 대한 투명성 확보(안 제5조 ~ 제6조)
- 「정부 표창 규정」 등을 준용하여 표창추천제한 기준 명확화(안 제7조)
- 표창 계획 수립 및 결정 내용 추가(안 제8조 ~ 제9조)
-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(안 제10조)
- 표창 대장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표창의 신뢰성 제고(안 제11조)
- 표창방법 및 표창추천에 따른 양식 통일화

## 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(참고) : 「정부 표창 규정」 및 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불 임 : 전부개정(안)